



( 1 / 1 )

발급번호		사업자등록증명 (일반과세자)	처리기간	
70			즉시	
상호(법인명)	더			
사업자등록번호	16			
성명(대표자)	진			
주민(법인)등록번호	81			
사업장소재지	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			
개업일	2017년 08월 21일			
사업자등록일	2017년 08월 21일			
업태	음식점업			
종목	치킨, 호프			
공동사업자	성명(법인명)		주민(사업자)등록번호	
	해당사항이 없습니다.			
위와 같이 증명합니다.				
※ 위 내용은 발급일 현재 상황으로서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.				
2018년 11월 30일				
접수번호	10			
담당부서	민원봉사실			
담당자	박			
연락처	02-			
				성동세무서장 (인)



\*본 증명의 위변조 여부는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 「국세청 홈택스(www.hometax.go.kr) 또는 모바일 홈택스> 민원증명(증명발급)>민원증명 원본확인」에서 발급번호로 확인이 가능합니다.  
(공문서를 위·변조하거나 행사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.)  
\*본 증명은 무인민원발급장구를 통해 발급된 증명이며,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.

[30300000320181130-#301-15:28:01]

무인민원발급창구

( 1 / 1 )

발급번호	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(과·면세점영업사업자 포함)		처리기간
83			즉 시
성 명(대표자)	전	주민(법인)등록번호	81
상 호(법인명)	더	사업자등록번호	16
업 태	음식점업	종 목	치킨, 호프
사 업 장	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		

(단위:원)

과 세 기 간		매출과세표준(수입금액)			납부할 세액 (환급받을 세액)
부터	까지	세	과세분	면세분	
2017/08/21	2017/12/31	66,836,364	66,836,364	0	472,856
2018/01/01	2018/06/30	252,136,501	252,136,501	0	9,861,700
		이 하	이 백		

위와 같이 증명합니다.

※ 위 내용은 발급일 현재 상황으로서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접수번호	10
담당부서	민원봉사실
담당자	서
연락처	02-

2018년 11월 29일

성동세무서장



\*본 증명은 국세청 홈택스(www.hometax.go.kr)의 「민원증명」 서비스에서 「민원증명 원본확인」 메뉴를 통해 문서발급번호로 위·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문서발급번호를 통한 확인은 발급일로부터 90일까지 가능합니다.  
본 증명에 대한 문의사항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.

# 납세증명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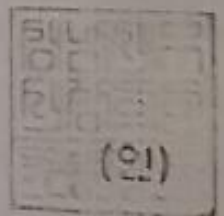
발급번호	77	처리기간	증시(단, 해외이주용 10일)				
납세자 인적사항	상호(법인명)	사업자등록번호					
	성명(대표자) 전	주민등록번호 81...					
	주소(본점) 경기도 성남시 *****						
증명서의 사용목적	<input type="checkbox"/> 대금수령 <input type="checkbox"/> 해외이주 (이주번호 제 호, 이주확인일 년 월 일)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기타						
증명서의 유효기간	유효기간	2018년 12월 28일					
	유효기간을 정한 사유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「국세징수법 시행령」 제7조1항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 (사유: )					
징수유예 또는 채납처분 유예의 내역  (단위 : 원)	유예종류	유예기간	과세기간	세목	납부기한	세액	가산금
		해	당	없	음		
물적납세의무 채납내역  (단위 : 원)	위탁자	과세기간	세목	납부기한	세액	가산금	
		해	당	없	음		

「국세징수법」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발급일 현재 위의 징수유예액 채납처분유예액 또는 「부가가치세법」 제3조의2에 따른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와 관련된 채납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채납액이 없음을 증명합니다.

접수번호	100226390591
담당부서	민원봉사실
담당자	정
연락처	031-

2018년 11월 28일

성남세무서장



• 본 증명서의 위·변조 여부는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 「국세청 홈택스(www.hometax.go.kr) 또는 모바일 홈택스 > 민원증명(증명발급) > 민원증명 원본확인」에서 발급번호로 확인이 가능합니다.  
 (공문시를 위·변조하거나 행사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.)  
 \*본 증명은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해 발급된 증명이며,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.  
 [7800000420181128-W511-17:32:05]